

국가기밀과 정보의 처리·전송등 유통문제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정보의 유통이 가속화 되면서 이적표현물 등 국가기밀정보의 유통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 기밀과 이적표현물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가 보안의 차원에서 건전한 정보유통의 제한적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건전한 정보의 유통

정부는 올해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경제·산업·사회 등 각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 각종의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도 성장과 안정을 이루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로의 목표설정은 올해로 끝나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문화·교육 등 전분야가 선진국수준에 도달되어 경쟁력이 확실하게 확보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다.

정보화의 수준향상이야말로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보화의 촉진은 정부와 국민 모두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흐르지 않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살아서 움직일 때에만 가치를 발휘하고 정보로서 생명력을 유지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명력을 지닌 자유롭게 흐르는 정보’에는 일정한 제한적 조건이 있다. ‘건전한 정보’라야 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정보’라야 한다.

건전한 정보라 함은 ‘불온정보’가 아닌 정보를 말한다. 음란·퇴폐 등 사회의 공공질서와 공중

도덕을 문란시키는 정보는 흘러서는 아니되고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기밀정보’ 역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밖에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등 기본적인 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도 막아야 한다.

앞으로 정보화가 촉진될수록 각종의 정보매체를 통하여 정보의 유통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최근에는 국가기밀정보를 비롯한 각종의 이적표현물이 PC통신 등을 통하여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 더욱 보안유지가 강화되어야 할 ‘국가기밀정보’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면서 국가기밀과 이적표현물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 검토

국가기밀의 정의

최근의 대법원판결(대법원 제2부, 94.5.24. 판결 94도930)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국가보안법(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公知)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위의 대법원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폭넓은 판단기준하에 설정되었다. 이를 좀더 알기쉽도록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기밀을 해치는 정보

첫째,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 지정된 모든 자료는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둘째,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은 국방비밀·외교비밀·첨단무기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즉 누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기밀사항을 국가기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판결에서는 범위를 크게 넓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기밀사항이 국가기밀에 속한다. 예컨대, 정치인의 동정이나 주소·인적사항·정치성향 등의 정보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제공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중요경제정책, 문화·사회단체 등의 동향과약 정보 등을 상세하게 북한에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다면 국가기밀의 누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문기사 또는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公知)의 사항이라도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매우 포괄적인 해석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우

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정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미공표의 정보’를 말한다. 이미 공표되어 공공연하게 공지(公知)된 정보는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신문보도 등으로 이미 공지된 정보라 하여도 이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

따라서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기밀」에서 공지(公知)의 개념은 제외된다고 보겠다.

이적표현물의 정의

최근에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실형(實刑)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정보화사회」 1994.8월호, P.24 참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94.5.24)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러한 표현물은 「구국가보안법」 및 「헌국가보안법」 각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성있는 표현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적표현물’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미화(美化)하거나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同調)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말한다.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화·찬양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의 찬양·미화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부정하는 내용은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

‘이적표현물’의 경우도 앞에서 말한 ‘국가기밀’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미 공표된 표현물 즉 간행된 책자 등에 수록되어 있다 하여도,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게재하여 전송, 배포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소개한(「정보화사회」 94.8월호 P.24) 바 있거니와 다른 책자에 소개된 사노맹의 주장(이적표현물)을 데이콤 컴퓨터통신망인 천리안에 수록하여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책자에 공표되었을 경우에도 함부로 PC통신 등 통신매체에 수록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기준은 누구나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금방 식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받는다 하여 무조건적인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을 받게 된다.

통신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응책

앞으로 UR협정체결이후 통신시장을 크게 개방함에 따라, 국내 중요정보의 해외누출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또한 제3국과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정보수집도 더

육 지능화·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어떤 특정의 정보가 ‘북한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인가의 판단은 ① 정보의 내용 ② 정보제공자의 신분(소스제공자) ③ 정보취득의 과정(난이도) ④ 정보가 북한에게 의 유용성·중요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판단은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정보를 처리·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처리업자」 자신이 건전한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의 판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문 등에서 공지된 정보라고 하여 모두 유통 또는 전송해서는 아니된다.

유통시켰을 때 북한에게 유익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법관에 의하여 판단되겠지만, 우선은 정보처리업자가 건전한 상식, 즉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보를 처리·유통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머리말에서 제시한 ‘자유로운 정보유

통’의 가장 중요한 제한적 요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참아야 하고 협조하여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기도 하다.

맺음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기밀」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정보자료에 해당된다. 공지(公知)의 여부는 따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신문이나 잡지, 기타 다른 간행물로부터 입수된 정보라 하여도 국가기밀사항이나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직당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전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협 회 간 행 물 판 매

협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판 또는 시내 유명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총판 : 도서출판 진한도서(전화 : 319-3535)
- 간행물 목록 - '94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10,000원/권)
 - 외국의 정보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및 현황 자료집(I, II)(100,000원/권)
 - 최신판 정보통신용어해설집(6,000원/권)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업무편람(20,000원/권)
 -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6,000원/권)
 - 기타 협회 발행 간행물